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421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3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,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(안 [별표 2], [별

표 4])

나.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으로 지정(안[별표 2], [별표 5]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7737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

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
○ 이메일 : consumer1@korea.kr

○ 전화 : 043 - 870 - 5455

○ 팩스 : 043 - 870 - 5677

1. 개정이유

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,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(안 [별표 2], [별표 4])

나.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(안[별표 2], [별표 5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에 분류 나목분류 1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) 가정용 미용기기	-
--------------	---

별표 2 제3호 분류 라목 “대상 없음”을 “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에 나목1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) 가정용 미용기기

별표 5 제2호 분류 라목의 품목란 “대상 없음”을 “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</p> <p>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모델 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. 생활</td> <td>1)~16) 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모델 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라. 섬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상 없음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4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</p> <p>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품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. 생활</td> <td>1)~16)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분류	모델 구분	나. 생활	1)~16) (생략)	(생략)		<u><신설></u>	<u><신설></u>		분류	모델 구분	라. 섬유	<u>대상 없음</u>	-	분류	품목	나. 생활	1)~16) (생략)	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</p> <p>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모델 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. 생활</td> <td>1)~16) 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7) 가정용 미용 기기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모델 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라. 섬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4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</p> <p>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품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. 생활</td> <td>1)~16)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분류	모델 구분	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<u>17) 가정용 미용 기기</u>	-		분류	모델 구분	라. 섬유	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	-	분류	품목	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
	분류	모델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생활	1)~16) 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<신설></u>	<u><신설>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분류	모델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섬유	<u>대상 없음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생활	1)~16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분류	모델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7) 가정용 미용 기기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분류	모델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섬유	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신설>

[별표 5]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
및 제6항 관련)

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라. 섬유	<u>대상 없음</u>

17) 가정용 미용기기

[별표 5]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
및 제6항 관련)

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라. 섬유	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